

July 10, 2014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관련 공개매수 예외 조항 신설

1. 개정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장외에서 6개월 동안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5% 이상의 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를 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33조, 동법 시행령 제140조).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규정”) 제3-1조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의 공개매수의무가 면제됩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증발공 규정 제3-1조 제4호 규정을 개정하고 제4의2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에 의해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거래에 있어서 매수자의 공개매수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2. 개정의 의의 및 적용 요건

채권금융기관이 관여하는 기업의 구조조정방식으로는 (i)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기업이 흑자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 실시하는 구조조정)과 (ii)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워크아웃(자율협약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정도로 재무구조가 부실화되었거나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실시하는 구조조정) 방식이 있습니다. 개정 전 증발공 규정 3-1조 제4호에 의하면 워크아웃 방식의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 매각의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의 공개매수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은 명확하였으나,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방식의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 매각의 경우 매수인의 공개매수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증발공 규정 제3-1조 제4호 개정 및 제4의2호 신설을 통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방식의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식의 매수인이 공개매수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이러한 구조조정 방식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다만 공개매수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에 준하는 일정한 경우에만 의무공개매수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에 대하여 의무공개매수의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여러 채권금융기관이 협약에 참여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
- ② 자율협약에 참여한 채권금융기관이 대출금의 출자전환외에 채권재조종 등 기업경영정상화 조치를 취하였을 것
- ③ 주식매수인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모든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것. 다만 협약 참여 채권금융기관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3. 향후 전망

금번 증발공 규정 개정을 통하여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방식 및 그와 관련된 M&A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장재영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350 | E-Mail. jychang@shinkim.com |
| ● 안혜성 변호사 | TEL. 02 316 4700 | E-Mail. hseahn@shinkim.com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